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6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9. 0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9. 0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9. 13.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정이유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통합 운영에 따라 고성군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예산 확보 필요함
다. 합 의
1)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32406(2023. 8. 21.)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231호
가) 예고기간: 2023. 7 . 20 . ~ 2023.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　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군훈련장 통합 운영에 따라 타 지역 소재 예비군훈련장 입소의 편의제공을 통한 고성군 거주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예비군훈련장 입소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 ·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강제(강행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그 목적 또한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훈련장의 경우 진주예비군훈련대 예비군훈련장으로 한정되어 향후 해당 훈련장의 수리 ·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소변경시 지원조례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 등 대상 훈련장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훈련책임 군부대의 장에게 예비군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차량 운행(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는 관할부대장의 임무이므로, 예비군훈련장의 입소에 관한 사항은 관할부대장의 임무(국가사무)로도 판단되며

참고 1]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 11. (생략)

② ~ ③ (생략)

② 특히,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사항을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2]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가. ~ 나. (생략)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 다. (생략)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 다. (생략)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 나.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군훈련장 입소차량의 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의 훈련장의 정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① 예비군훈련장 입소에 관련한 차량운행과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②「예비군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 및 상세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9. 13. 원안가결 함.